

● 제320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
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
검 토 보 고 서**  
(의안번호 : 1189 )

2023. 09. 06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서울특별시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1189

### I. 동의안 개요

#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시장
- 나. 제안일 : 2023. 08. 14.
- 다. 회부일 : 2023. 08. 21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의거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,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2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.
- 위탁기간('23.12.31.) 만료 예정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 최초동의일('16.4.22.)로부터 6년이 경과된 사업이므로 재계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

2) 사무형<sup>1)</sup> 민간위탁

3) 위탁기간 : 2024.1.1. ~ 2026.12.31.(3년)

4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위임·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과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장기·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
-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·판정·재활치료·자립서비스·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자격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
- 전문인력 직접채용 및 양성 과정이 장기간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교육비 인건비 경감 등 비용절감의 효과

5) 위탁사무

-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
-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
-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-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
-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
- 발달장애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

---

1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관리위탁 지침 p18 사무형위탁 :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

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지원
-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
-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등
-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자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

#### 6)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(142㎡)
- 인력현황 : 총12명
  - 센터장 1명,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7명, 권익옹호 3명, 회계 등 운영지원 1명

#### 7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- 수탁자명 : 한국장애인개발원(대표 : 이경혜)
- 소재지 :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
- 설립목적 :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평가 및 정책개발·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

#### 8) 소요예산('23년) : 1,593,680천원
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607,800천원, 주간활동 운영 236,000천원
- 공공후견 501,760천원, 부모교육 144,000천원, 긴급돌봄지원 104,120천원

#### 9) 심의결과 : 적정(23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제2항

② 시·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

① 장은 법 제 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○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2(업무의 위탁)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2(업무의 위탁)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### 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‘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’ 사무가 최초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시점(2016. 7월)을 기준으로 6년이 경과<sup>2)</sup> 하게 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재계약<sup>3)</sup>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‘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’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<sup>4)</sup>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관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
  -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
  -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
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단서, “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

3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

- 재위탁 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.

- 재계약 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.

4) 제33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(보호자를 포함한다)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
-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
-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
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
-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
-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등
-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자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

〈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탁법인 현황 〉

- 위탁사무 :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
- 위탁방식 : 사무형 민간위탁
- 기존수탁법인 : (재)한국장애인개발원(대표자: 이경혜)
  - 소재지 :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
  - 설립목적 :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·평가 및 정책개발·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
  - 주요사업 : 장애인정책연구, 직업재활, 일자리개발, 중증장애인우선구매, 유니버설디자인, 장애인식개선교육, 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 등

-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조례」 제11조5) 및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26)에 의거 발달장애

5) 제11조(위탁) ① **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.** 이 경우 지원센터는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6) 제16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(이하 이 조에서 “한국장애인개발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개정 2021. 11. 23.>

1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
2.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
인지원센터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7) 및 제6조8) 등에서는 ‘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‘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’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# 〈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경위〉

구분	수탁기간	수탁자	수탁자 선정방법	비고
1차	'16.07.01.~'17.12.31.	한국장애인개발원	신규 위탁	공개모집
2차	'18.01.01.~'20.12.31. (※ 협약내용 이견으로 협의시 까지 90일('21.03.31까지) 일시연장)	한국장애인개발원	재계약	
3차	'21.04.01.~'23.12.31	한국장애인개발원	재계약	

## 2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

○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2항에서 ‘시·도

3.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·평가에 관한 업무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

2.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·평가에 관한 업무

7)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8)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.

1~8. <생략>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고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9)에서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고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2항10)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검토

- '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'는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지역 사회 지역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주요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, 공공후견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, 범죄 피해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사업,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.

9)

10) 제16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(이하 이 조에서 “한국장애인개발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개정 2021. 11. 23.>

1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
2.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3.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·평가에 관한 업무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. <개정 2021. 11. 23.>

1.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
2.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·평가에 관한 업무

- 23년 제2차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‘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’는 80.98점으로 우수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됨.
  - 공통지표 영역의 우수사항은 장애인 단체 등 67개 기관과 연계 협력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며, 특히 발달장애인 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과 협업하여 특화사업을 운영한 사례가 우수한 평가를 받음
  - 또한, 통합사례 회의가 수시로 진행되어 팀 간 소통과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점과 직무 및 업무에 대한 역할 및 필요 역량을 직무 기술서에 명확하게 기술하여 업무 담당의 직무적 인식을 명시하고 있는 점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
  - 사업지표영역의 우수사항은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특정 후견제도에 대한 안내와 심도 있는 전문평가 진행하다는 점이었음
  - 대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지원을 받고, 예산 확보를 통해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요원을 채용해 업무의 속도를 높이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우수함
  -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증가와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응 노력으로 수사기관(경찰서 등), 복지관,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지원을 강화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차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수함
  - 서울시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대응노력으로 평생설계지원 강화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홍보수요 확인 및 홍보지 배포 등 활발한 활동 진행하였으며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활성화 노력이 우수함

- 평가 시 미흡하였던 1-3-3 민간전문가 활용,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역사회 공헌 노력 및 성과를 평가에 있어 지적사항은 인사위원, 운영위원 등이 중복적인 경우가 있어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개선함

#### 4 종합 검토의견

- 금번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,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추고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2에 따라 수탁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, 본 재계약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단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·감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며,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## 붙임 1 <2022년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요사업 추진실적>

### ① 개인별지원계획: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, 정보제공·서비스 연계지원

합계	발달장애인 및 가족상담	개인별 지원계획 수립	사례회의 및 자문	서비스의뢰 및 연계	모니터링
1,021건	175건	94건	182건	120건	450건

### ② 공공후견지원사업 : 후견심판청구 지원,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, 후견 관련 법률상담

합계	공공후견 지원사업 상담	심판청구지원	공공후견 대상자 모니터링	공공후견 관련 유관기관네트워크
423건	208건	71건	142건	2건

### ③ 권리구제사업 : 범죄 발생 시 신고접수 및 현장방문, 발달장애인 보호시설 연계 및 사후관리, 형사 사법절차 지원

합계	권리구제 상담	현장조사 및 현장방문	기관연계	형사사법 절차지원	모니터링 지문등록
307건	169건	23건	17건	30건	68건

### ④ 주간활동서비스 :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당사자에 의미있는 지역사회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

대상자 선정조사	수급자격 위원회 운영	모니터링	홍보	개인별 지원계획 연계
534명	12회	3회	2건	10건

### ⑤ 부모교육지원: 발달장애인, 부모 및 보호자, 가족, 관련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

구분	교육인원(명)	사업홍보 및 이용인 발굴	모니터링 및 결과보고
합계	851(실)/ 2,889(연)	46건	10회
영유아기	307(실)/1,244(연)	4건	1회
성인전환기	310(실)/776(연)	4건	1회
성인권	234(실)/869(연)	38건	8회

붙임 2 <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평가결과 >

평가영역	평가범주	평가지표	지표배점	세부배점	평가등급	평점	득점
공통 사무 평가	1. 사업 인프라	<b>1-1. 조직 및 인력 운영</b>	5.00	-			3.80
		1-1-1.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		2.50	A0	74	1.85
		1-1-2.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		2.50	A0	78	1.95
		<b>1-2.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</b>	8.00	-			6.12
		1-2-1.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		5.00	A0	78	3.90
		1-2-2.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		3.00	A0	74	2.22
		<b>1-3. 사회적 가치 기여</b>	6.00	-			4.68
		1-3-1.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		3.00	A0	78	2.34
		1-3-2.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		1.50	S	92	1.38
	1-3-3.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	1.50		B+	64	0.96	
	2. 사업 활동	<b>2-1. 사업계획 집행수준</b>	7.50	-			6.49
		2-1-1. 사업계획의 적정성		2.00	A+	80	1.60
		2-1-2.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준수 수준		1.50	A+	86	1.29
		2-1-3.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		2.00	A+	80	1.60
		2-1-4. 정책준수 노력도	2.00	S	100	2.00	
		<b>2-2. 사업활성화 개선노력</b>	5.50	-			4.12
2-2-1.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		3.00		A0	74	2.22	
2-2-2.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	2.50	A0		76	1.90		
개별 사무 평가	3. 사업 성과	<b>3-1. 개인별 지원계획</b>	18.00	-			15.30
		3-1-1.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		8.10	-	-	7.24
		3-1-2. 모니터링		10.80	-	-	2.48
		3-1-3.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		6.30	A+	80	2.88
		3-1-4.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		6.30	A0	75	2.70
		<b>3-2. 공공후견 지원사업</b>	6.75	-			5.96
		3-2-1. 공공후견지원사업 상담 - 상담건수		1.35	-	-	1.34
		3-2-2. 심판청구지원		1.35	-	-	1.35
		3-2-3. 공공후견 대상자 모니터링		1.35	-	-	1.35
		3-2-4.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		1.35	A0	72	0.97
		3-2-5.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		1.35	A0	70	0.95
		<b>3-3. 권리구제 지원사업</b>	11.25	-			9.76
		3-3-1. 상담 건수		1.35	-	-	1.25
		3-3-2. 현장조사, 방문 진행건수		1.35	-	-	1.07
3-3-3. 보호조치 기관연계 - 연계건수	1.35	-		-	1.35		
3-3-4. 사법절차지원 및 수사의뢰 - 지원건수	1.35	-		-	1.23		
3-3-5. 지문 등록 - 등록건수	1.35	-	-	1.35			

평가영역	평가범주	평가지표	지표배점	세부배점	평가등급	평점	득점	
		3-3-6.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		2.25	A+	80	1.80	
		3-3-7.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		2.25	A0	76	1.71	
		<b>3-4. 주간활동 서비스</b>		9.00	-			7.50
		3-4-1. 제공인력교육 - 진행횟수	0.54		-	-	0.54	
		3-4-2. 제공인력교육 - 참여 인원	0.81		-	-	0.81	
		3-4-3. 대상자 선정조사 - 조사 건수	4.05		-	-	3.45	
		3-4-4.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	1.80		A+	80	1.44	
		3-4-5.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	1.80		A0	70	1.26	
	<b>3-5. 대외적 우수사례성과창출 수준</b>		3.00	3.00	A+	88	2.64	
	4. 지도 점검 이행 노력	4-1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	5.00	3.00	-	-	3.00	
		4-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		2.00	B+	68	1.36	
사용자 만족도 평가	5. 만족도 제고 노력	5. 시민만족도 평가결과(합계)	15.00	-			12.26	
		5-1. 주민 만족도 조사		10.00	-	-	8.36	
		5-2. 주민 만족도 제고 노력		5.00	A0	78	3.90	
6. 감점사례	1. 임금체불(사전협의된 임금미지급), 세금체납		-2.00	-2.00	-	-	0.00	
	2.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		-2.00	-2.00	-	-	0.00	
	3. 협약사항 위반(제3자 위탁금지,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) ※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		-2.00	-2.00	-	-	0.00	
	4. 위탁사무 지연처리, 불공정한 사무처리, 비용 등 부당취득		-2.00	-2.00	-	-	0.00	
	5.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, 장비, 예산 사용		-2.00	-2.00	-	-	0.00	
	6. 수탁기관 필수교육(인권, 청렴, 성희롱·성폭력 교육)미이수		-2.00	-2.00	-	-	-2.00	
	7. 직장 내 괴롭힘 발생		-2.00	-2.00	-	-	0.00	
	8.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'안전·보건 의무조치 미이행'		-4.00	-4.00	-	-	0.00	
	9. 감사 지적사항 발견	징계, 문책, 시정	-2.00	-2.00	-	-	0.00	
		주의(경고, 훈계)	-1.00	-1.00	-	-	0.00	
개선요구, 고발·수사요청		-0.50	-0.50	-	-	0.00		
권고, 통보, 현지조치		-0.10	-0.10	-	-	0.00		
<b>합계</b>			<b>100.00</b>	-			<b>80.98</b>	